

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  
 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 
 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 9차 회의		일 시	2017.11.29.(수) 09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김태호, 이호선, 김인준, 이태준, 전수빈, 김민주 (이상 7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 예산편성 담당자: 배수현 차장(예산평가팀)		
불참위원	없음		
의 제	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·의결		

## ◎ 회의내용

### 1. 개회선언

#### 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,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지난 8차 회의에 이어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심사의 결을 안건으로 함.

### 2.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

#### 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현재 각 단과대학은 자율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단과대학이 갖고 있는 기부금 수입을 건축물관리비에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.
-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처를 정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.

#### 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특정 단과대학으로 기부한 기부금은 해당 단과대학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출

용도를 단과대학에서 직접 결정하고 있음.

- 대학 본부에서는 단과대학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를 정하여 지출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기부금에 대한 사용 계획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인지, 기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요청할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단과대학에서는 기부금 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기부금 규모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는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추경 총괄표에 있는 학생경비 관련 비교란을 보면 기타 학생경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본 예산은 보수적으로 다소 여유를 두고 편성하고 있으며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맞게 지출도 조정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님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캠퍼스 추가 확보와 전임교원 관련 내용이 추경 등심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인지 교육부 대학장학과에 문의한 결과, 대학의 학칙에 따르되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금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법에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들, 즉 도시근로자 가계소득, 물가상승률 등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생 등록금 수입의 상당 부분이 캠퍼스 확충과 전임교원 인건비에 지출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이 있음.
- 특정 단과대학에서 강의가 줄어들고 교수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있었음.
- 추경 심사 시 단순히 수입·지출 규모만 논의하기 보다는 적정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봐야함.

- 추경 심사를 위해 등록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보자는 의도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생 대표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음.
- 추경 심사에서 모든 사항을 논의하다보면 회의 일정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음.
- 안건의 진행을 위해 추경 심사에 필요한 논의 사항을 어느 정도 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논의를 막는 것은 아님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의 대화 창구임. 논의 사항을 한정하는 것에서 학생을 대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대학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며 사립대학은 더욱 그러함.
- 공급자가 공급하는 가격에 수요자가 관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며 대학이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임. 따라서 등심위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.
- 회의 의사 진행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며 위원장 권한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운영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시장경제원리만 적용할 수는 없음.
- 복약관 난방 설비에 소음이 심하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많음. 이를 적립금으로 해결하는 등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추경예산안 편성은 이미 심사·의결한 본예산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, 예측할 수 없는 수입 변동이나 돌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지출을 조정하여 수입·지출 규모를 맞추는 것임.
- 해당 사항은 당초 예측 불가능한 지출은 아니므로 2018학년도 본 예산안 편성 시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.

= 잠시 정회를 한 후, 회의를 속개함. =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포괄적인 범위에서 학우들의 교육권과 수강권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추경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나 긴급한 사유의 추가 예산 편성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만큼 2018학년도 예산 편성 시에 학생들의 수강권 관련 사항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함.

■ 위원장

- 학생들의 수강권, 교육권과 관련한 논의는 2018학년도 본 예산 편성 시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른 추가 질문이 없는지 질의함.

3. 심의 및 의결 사항

- 2017학년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의결함.

4. 폐회선언

- 이상 2017학년도 추경예산(안) 심사·의결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7. 11. 29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